



마이데이터 산업의 내용과 과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황현아 연구위원

정부는 2018년 7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18년 11월, 위 내용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최근 공청회가 진행되었음. 마이데이터 산업은 본인 정보의 일괄 수집·조회 서비스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EU GDPR에서 새롭게 도입된 정보이동권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음.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되면 정보관리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들의 정보 처리 및 이동 관련 비용 부담 문제, 금융 플랫폼 구축에 따른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 체계의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금융회사로서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18년 7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18년 11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¹⁾은 본인 정보의 일괄 수집·조회 서비스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함²⁾
 -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 신용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재무현황 분석, 맞춤형 재무컨설팅,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및 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현재 제한된 형태이기는 하나 일부 IT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³⁾
- 2018년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정의 규정⁴⁾, 허가요건⁵⁾, 업무범위⁶⁾, 행위규칙 및 법률관계⁷⁾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 분야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주체 중심의 정보 통합관리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함. 정부는 금융, 통신, 에너지, 유통, 의료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확대하되, 우선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관계부처 합동(2019. 1. 16), 「혁신성장 전략투자,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23년)」, p. 9~10). 이하 본고에서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함

2) 금융위원회(2018. 7),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p. 2~3

3) 예컨대,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알려진 뱅크샐러드(주)레이니스트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https://banksalad.com/>)

- 개정안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일반 신용조회업과 구분하여, 완화된 최소자본금요건을 적용하고, 금융기관 지분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음⁸⁾
- 또한 투자자문·일임업,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 업무, 본인이 직접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계좌 제공업무 등을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상황이며, 정무위 역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⁹⁾
- 다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정보처리 역량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른 산업¹⁰⁾과의 업무영역 구분 문제 등에 대해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마이데이터 산업은 EU GDPR¹¹⁾에 도입된 정보이동권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을 개선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가짐**

- EU GDPR에서 새롭게 도입된 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은, 정보주체가 (i) 개인정보를 수령하고 원하는 경우 정보처리자(Controller)의 방해 없이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권리 및 (ii)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내용으로 함¹²⁾
- 정보이동권에 의해 EU 시민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전을 요청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4)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조 9의2호, 9의3호
 5)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6조 제2항 1의5호
 6)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11조 제4항, 제11조의2 제5항
 7)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2조의8 내지 제22조의 10
 8) 신용조회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이고 금융회사가 50%를 출자할 것이 요구되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경우 최소자본금요건이 5억 원이고 금융회사 출자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9) 정무위원회(2018.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636호)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10)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개인신용평가업의 경우 부수업무로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본인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개인신용평가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간의 분류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정무위원회(2018. 12), 「검토보고」, p. 95~96)
 11)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기존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인 Directive 94/46/EC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Regulation 2016/679’로 공식 채택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음. GDPR은 (i)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6대 원칙(① 적법성·공정성·투명성, ② 목적 제한, ③ 데이터 최소화, ④ 정확성, ⑤ 보관기간 제한, ⑥ 무결성·기밀성)을 정하고, (ii) DPO(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 역내 대리인 지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등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iii) 정보제공주체의 권리를 신설(정보처리 제한 요구권, 개인정보 이동권) 및 강화(프로파일링 거부권, 삭제권(잊혀질 권리))하고, (iv) GDPR이 적용되는 EU 역내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되, 역외 전송은 적정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국가로만 허용하고 있음. (v) GDPR을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2천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총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총 매출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함(GDPR에 관한 위 내용은, 정일영 외(2018. 12. 21),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제도 개선방안」, 『STEPI Insight』, vol. 22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6~9를 참고하여 정리함)
 12) EU GDPR Article 20, “Right to data portability”

가능한 경우 다른 정보처리자(Controller)에게 직접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정보이동권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론¹³⁾이 있었으나, 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IT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도입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음
 - 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의 측면뿐 아니라, 미국계 IT 플랫폼 기업들이 장악한 데이터 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측면도 있음¹⁴⁾
 - EU에서는 GDPR의 제정을 EU의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실행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음¹⁵⁾
- 이러한 정보이동권에 기반을 둔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가 정보 제공에 대해 소극적 동의를 하는데 그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정보를 모으고 이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¹⁶⁾

■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GDPR의 정보이동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의 측면보다는 신용정보관련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금융기관 등에 대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자신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및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전송 방법 등을 명문으로 정하였음¹⁷⁾
-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의 대상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전체에 적용되는 GDPR의 정보이동권보다는 협소한 개념임
 - GDPR의 정보이동권 도입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거대 IT 플랫폼 기업의 정보독점을 완화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이동권의 대상을 신용정보에 제한할 이유가 없고 개인정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¹⁸⁾
- 현행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13) 찬성론은 정보이동권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IT업체에 갇히는 것(Lock-In)을 피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택권 확대 및 경쟁 개선·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음. 반면, 반대론은 정보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데, 광범위한 정보이동권을 도입할 경우 또 다른 경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며 결국 소비자이익도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음(박희일(2017),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p. 217~218)

14) 박희일(2017), p. 221

15) 정일영 외(2018. 12. 21), p. 6

16) 고환경 외(2019. 1),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 『BFL』, 제93호(특집: 금융정보의 보호와 이용), p. 37

17)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3조의2

18) 참고로, 정부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금융 외에 통신, 에너지, 유통, 의료 등의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위 분야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별도의 정보이동권 규정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의 정보이동권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음¹⁹⁾

- 정보이동권 확대는 정보 주체가 플랫폼에 예측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택하고 자신의 정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정보이동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금융회사들은 정보전송권 행사에 대응한 정보 전송 등의 부담하게 되고,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서비스 체계의 변화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고객들이 정보전송권을 적극 행사할 경우, 그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은 정보 관리를 체계화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고객의 요구 시 정보를 지체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하고,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고객 요청 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 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²⁰⁾
 - 위와 같은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게 위해서는, 정보의 이동·전송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에 투자하고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²¹⁾, 정보의 상호운용성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²²⁾
- 정보전송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추가적인 관리 체계 및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부담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²³⁾, 정보전송 요구권은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 행사에 따른 비용도 권리행사자인 정보주체와 그 상대방인 신용정보처리자 사이에서 분담될 필요가 있음
-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활성화 되어 고객데이터의 공유가 확산되고 대형 금융사의 정보 독점 및 이를 통한 시장 영향력 집중이 완화될 경우²⁴⁾ 금융사들의 기존 상품 관련 판매 및 서비스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일부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뱅크샐러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

19)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이며, 개인정보 이동권은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2018. 12. 12), “정보인권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한다”)

20)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3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21) 서정호(2018. 11), 「마이데이터산업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대응방안」, 『금융포커스』

22) 박희일(2017), p. 227

23) 개정안 제22조의10 제4항 및 제5항

24)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정보 독점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 내에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고 시장 집중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금융위원회(2018. 7), p. 7)

고 있음²⁵⁾

-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어 본격 시행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면 기존 금융회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kiri**

25) 조선비즈(2019. 3. 5), “우리은행,뱅크샐러드와 MOU 체결... 연계금융상품 출시”; 연합뉴스(2019. 3. 6), “대구은행-레이니스트 ‘뱅크샐러드’로 디지털 금융 활성화”; 한국보험신문(2019. 2. 18), “한화손보, 뱅크샐러드와 제휴 디지털 보험서비스 개발”; 파이낸셜뉴스(2018. 11. 1), “신한카드, 뱅크샐러드와 마이데이터사업 업무협약 체결”; 매일경제(2018. 9. 17), “한화투자증권,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 위해 ‘뱅크샐러드’ 업무협약”; 인더뉴스(2019. 3. 28), “보험료 내줄테니 ‘미니암보험’ 가입하라는 뱅크샐러드...이유는?”